

인천-김포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변경 실시협약



2011. 04. 07.

국 토 해 양 부
인천김포고속도로(주)

변경 실시협약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 이라한다)에 의거 국토해양부장관(이하 “주무관청” 이라 한다)과 인천 김포고속도로주식회사 (이하 “사업시행자” 이라 한다)는 2007년 7월18일 인천~김포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시행을 위한 실시협약(이하 “실시협약” 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던 바, 실시협약 제 13조에 의한 총사업비 변경 여건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실시협약(이하 “변경실시협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 (정의)

이 변경실시협약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이 변경실시협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실시협약에서 정의된 의미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제2조 (총사업비 및 총민간사업비에 관한 사항)

실시협약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당 초	변 경
총사업비는 <별표2> (총사업비 및 총민간사업비)와 같이 2004년 6월30일 불변가격 기준으로 금 7,547.29억원이며 총사업비 중 총민간사업비는 <별표2>(총사업비 및 총민간사업비)와 같이 2004년 6월 30일 불변가격 기준으로 금7,547.29억원이다. 총사업비는 본 협약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다.	총사업비는 <별표2> (총사업비 및 총민간사업비)와 같이 2004년 6월30일 불변가격 기준으로 금 8,857.85 억원이며 총사업비 중 총민간사업비는 <별표2>(총사업비 및 총민간사업비)와 같이 2004년 6월 30일 불변가격 기준으로 금7,724.04억원이다. 총사업비는 본 협약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다.

제3조 (총사업비의 변경에 관한 사항)

실시협약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당 초	변 경
마. 경인운하 사업시행시 횡단교량 방식 변경으로 공사비가 증감되는 경우	마. 경인아라뱃길 사업으로 인한 노선 조정 및 횡단교량 구조변경 등으로 공사비가 증감되는 경우

제4조 (공사비에 관한 사항)

실시협약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당 초	변 경
공사비는 <별표2>(총사업비 및 총 민간사업비)에 명시된 바와 같이 2004년 6월 30일 불변가격 기준 금 6,787.8억 원으로 한다.	공사비는 <별표2>(총사업비 및 총 민간사업비)에 명시된 바와 같이 2004년 6월 30일 불변가격 기준 금 8,041.35억 원 으로 한다. 단, 경인아라뱃길 사업에 따라 변경 되는 공사비는 잠정적으로 별표2에 기재된 실시설계 미시행분 2,383.78 억 원으로 하되, 실시설계 완료후 설 계VE 등을 통해 주무관청과 협의하 여 확정하기로 한다.

제5조 (운영비용에 관한 사항)

실시협약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당 초	변 경
본 사업의 총 운영비용은 2004년 6월 30일 불변가격 기준 금 2,769.9억원 (법인세 제외)이며, 연도별 부문별 운영비용 내역은 <별표7>(운영비용)과 같다. 고속도로통행카드 할인수수료, ETCS운영에 따른 통행료 정산수수료 등 통행료 징수와 관련하여 발생하게 되는 제수수료는 사업시행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본 사업의 총 운영비용은 2004년 6월 30일 불변가격 기준 금 2,912.0억원 (법인세 제외)이며, 연도별 부문별 운영비용 내역은 <별표7>(운영비용)과 같다. 단, 경인아라뱃길 사업으로 변경되는 운영비는 잠정적으로 금 142.1억원으로 하되, 실시설계후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확정하기로 한다. 고속도로통행카드 할인수수료, ETCS 운영에 따른 통행료 정산수수료 등 통행료 징수와 관련하여 발생하게 되는 제수수료는 사업시행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 (건설보조금에 관한 사항)

실시협약 제5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당 초	변 경
	① 주무관청이 총사업비 중 일부로서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할 건설보조금은 잠정적으로 2004년 6월 30일 불변가격 기준으로 금 1,133.8억원으로 하되, 건설보조금은 제13조(총사업비의 변경), 제19조(공사비) 및 제42조(운영비용)에 의해 확정된 금액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제49조(사업수익율)로 정하여진

사업수익을 조건을 만족하는 금액으로 한다.

건설보조금 지급일정은 <별표2-1> (건설보조금 재원 및 지급일정)과 같다.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의한 건설보조금을 분기별로<별표2-1>(건설보조금 지급일정)이 정한 일정에 따르되 공사 수행 누계 실적공정률(누계 계획공정률 대비 누계 실적공정의 비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지급을 신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건설보조금을 지급할 시점에는 2004년 06월부터 지급대상 분기의 직전분기말까지의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적용한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주무관청은 실제공정율이 계획공정률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초과된 공정에 대한 건설보조금을 선지급할 수 있다.

③ 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른 누계 실적공정이 누계 계획공정에 미달하여 예정된 건설보조금의 지급을 유보한 경우, 미달된 공정이 만회되었음이 확인된 분기의 건설보조금 지급시 유보한 건설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가 본조 제2항에 따라 건설보조금 지급신청을 하였음에도 동 분기에 대한 건설보조금이 지급 기한내에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실제지급일까지 기준이자율을 적용

	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단, 예산이 미확보된 2011년도 지급분은 제외한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사업시행자가 제22조(공정관리) 제4항에 따라 제출한 부진 공정만회대책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실적공정율과 관계 없이 당해 분기에 지급하여야 할 건설보조금 전액(전분기미지급액+금분기지급액)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⑥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지급이 유보된 건설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유보된 기간 동안의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하지 아니한다.
--	--

제7조 (부록의 변경)

실시협약의 별표2, 별표3, 별표6, 별표7, 별표8은 이 변경실시협약에 첨부된 별표2, 별표3, 별표6, 별표7, 별표8로 각각 변경되며, 별표2-1은 신설한다. 실시협약상 해당 별표에 대한 언급은 이 변경실시협약에 의해 변경된 별표를 가리키는 것으로 본다.

□ 제8조 (실시협약의 효력 변경)

실시협약의 규정은 이 변경실시협약의 내용과 배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이 변경 실시협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에 그 효력을 상실하며, 이 변경 실시협약의 내용대로 변경된다. 다만 이 변경실시협약 체결일 현재 이 변경실시협약의 내용과 배치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실시협약에 따라 발생한 본 협약당사자간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9조 (변경실시협약의 효력 발생)

이 변경실시협약은 이 변경실시협약 체결일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이 변경실시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 및 사업시행자는 자신의 적법한 자로 하여금 아래 일자에 이 변경실시협약에 각자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11년 04월 07일

대한민국
국토해양부장관



인천김포고속도로 주식회사
대표이사 조종환

